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용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1월 16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112호, 2006. 12. 28. 공포. 2007. 7. 1. 시행)에 맞춰 관련사항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자대상 중 재학생 학자금대출 대상에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본인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3조)
- 학자금의 용자기간을 당초 3년 거치에서 4년 거치로 변경함.(안 제4조)

-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함.(안 제7조)
- 특별회계의 세출에 경상경비를 추가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기금을 용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사망이나 천재지변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기금을 용자받은 자와 보증인의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자금 등 용자시 채권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이를 악용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용자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 하게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보증 제도가 있었는데 행안부에 질의한 바 지방세 법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음. ○ 노력하겠습니다. ○ 용자를 받으신 분들이 사망하거나 파산되는 경우 등 규정에 따라 충분한 징수노력을 기울인 후 불가피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도 어차피 시민 세금임. 세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융자과정에서부터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봄.</p> <p>○ 기금에 비해 융자실적이 저조한데?</p>	<p>○ 잘 알겠음.</p> <p>○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상 사회복지과장)</p>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관리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계비속에 대한 전문대학이상”을 “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 전문대학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전문대학 이상 신입생 또는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3호제1항제1호, 2, 3호, 5호”를 “제3조제

1항제1호, 제2호,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세대당 7,000,000원”을 “세대당 700만원”으로 하며, “1년거치후 72개월 균등분할”를 “1년 거치 후 72개월 균등분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 거치”를 “4년 거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모두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퍼센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위한 필요한”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하며, “회수하게”를 “상환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이외의”를 “목적 이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융자를 받은 자(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9조 제목 “(세입, 세출)”을 “(세입·세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 수입”을 “그 밖에 수입”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를 “제2항·제3항에 따른 용자금 및 경상경비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자활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를 “자와 보증인이 사망이나 천재지변으로”로 하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를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규칙에”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현행)를 제15조로 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자금 용자금 거치기간)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학자금 용자금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거치기간을 적용한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24호
의결 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112호, 2006. 12. 28. 공포· 2007. 7. 1. 시행)에 맞춰 관련사항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융자대상 중 재학생 학자금대출 대상에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본인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3조)
- 나. 학자금의 융자기간을 당초 3년 거치에서 4년 거치로 변경함.(안 제4조)
- 다.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라.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함.(안 제7조)

마. 특별회계의 세출에 경상경비를 추가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기금을 용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사망이나 천재지변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기금을 용자받은 자와 보증인의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관리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계비속에 대한 전문대학이상”을 “본인 및 직계비속에 대한 전문대학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전문대학 이상 신입생 또는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3호제1항제1호, 2, 3호, 5호”를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세대당 7,000,000원”을 “세대당 700만원”으로 하며, “1년거치후 72개월 균등분할”를 “1년 거치 후 72개월 균등분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 거치”를 “4년 거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모두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퍼센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위한 필요한”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하며, “회수하게”를 “상환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목적이외의”를 “목적 이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자를 받은 자(학자금 용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가 시 관
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9조 제목 “(세입, 세출)”을 “(세입·세출)”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기타 수입”을 “그 밖에 수입”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를 “제2항·제3항에 따른 용자금 및
경상경비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자활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를 “자와 보증
인이 사망이나 천재지변으로”로 하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
칙이 정하는 바에”를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규칙에”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자금관리심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현행)를 제15조로 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자금 융자금 거치기간)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학자금 융자금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거치기간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6조(용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용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용자금을 용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용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p> <p>1. 용자를 받은 자가 용자를 받은 <u>목적 이외의</u>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p> <p>2. 용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용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p> <p>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운영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사는 <u>시정조정위원회</u>(구에서는 구기금관리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p>	<p>제6조(용자금의 상환) ① ----- ----- ----- <u>제3항에</u> ----- 따른 ----- -----<u>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u> -----.</p> <p>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u>제3항에도</u> ----- ----- -----<u>상환하게</u> ----- -----.</p> <p>1.----- -----<u>목적 이외의</u> ----- -----</p> <p>2. <u>용자를 받은 자(학자금 용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u></p> <p>제 7 조 (심 사 위 원 회) ----- <u>그 밖에</u> ----- ----- ----- <u>생활보장위원회</u> ----- ----- -----.</p>

현행	개정안
<p>제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p> <p>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 한다.</p> <p>제10조(기금운용관) ① (생략)</p> <p>② 기금운용관은 시의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p> <p>③ (생략)</p> <p>④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p> <p>제13조(감면조치)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p>	<p>제9조(세입·세출) ① ----- ----- -----그 밖에 수입----- -----.</p> <p>②----- 제2항·제3항에 따른 용자금 및 경상경비로 -----.</p> <p>제10조(기금운용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자활지원 업무담당-----.</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자활지원업무담당-----.</p> <p>제13조(감면조치) ----- 자와 보증인이 사망이나 천재지변 으로 ----- ----- -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규칙에 - - - - - -----.</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36 371 432 409">< 신설 ></p> <p data-bbox="236 1317 831 1485">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data-bbox="841 371 1442 663">제14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p> <ol data-bbox="858 685 1442 976"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는 경우 2. 그 밖의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p data-bbox="858 999 1442 129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p> <p data-bbox="841 1317 1442 1485">제15조(시행규칙) ----- 시행에 ----- 필요한 -----.</p>

<관계 법령 발췌서>

○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자활급여)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5의2.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5의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3. 급여기준의 결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2008.2.29>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 이내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3.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자금의 대여 등 <개정 2007.6.28>) ①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1.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신설 2007.6.28>

③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의 자금 대여규모, 사용계획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④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⑤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제19조 (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 지방세법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본조신설 1994.12.22]